"시민이 행복하고,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"

서울에너지공사

받는곳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피복지급 규정 제정 보고

1. 관련근거 : 사규관리규정(규정 제4호, 2017.01.19) 제8조(절차), 제9조(시행)

2. 위호와 관련하여 사규심의위원회 수정 의결 받은 피복지급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.

붙 임 : 1. 피복지급규정 전문 1부.

2. 피복지급규정 비교검토표 1부.

3. 제2회 사규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.

4. 제2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보고 1부. 끝.

과장	윤대열	김사흠	정록성	김용남	박진섭
					김철수